

의안번호	제 671 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김봉회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7년 8월 21일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김봉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71
----------	-----

발의연월일 : 2017년 8월 21일

발의자 : 김봉희, 임순목, 이광진,
강현삼, 박병진, 장선배,
황규철

1. 제안이유

재난현장에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민간의 활동에 따른 인적·물적손실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 손실 보상 및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재난현장에서의 민간의 소방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에 따른 인적·물적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민간자원 보상 청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협의 : 소방본부 대응예방과와 협의

라. 입법예고 : '17. 8. 14. ~ '17. 8. 20.(의회 홈페이지 게재)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풍,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2. “소방활동”이란 재난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재난 등”이라 한다)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 안전조치 등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재난 등이 발생한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민간자원”이란 재난 등이 발생한 현장(이하 “재난현장”이라 한다)에서 충청북도 및 관계인 소유 외에 사용된 인적·물적 자원을 말한다.
5. “소방대장”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재난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의 소방활동 등) ① 재난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소방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목격자는 소방대가 도착하면 소방활동을 중지하고 소방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③ 소방대장은 재난현장에서 민간자원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민간자원을 계속 지원하게 하거나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④ 소방대장은 재난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소방활동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인적 자원에 대한 보상) 도지사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소방활동에 참여하거나, 소방대장의 요청에 의한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하거나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물적 자원에 대한 보상) ① 도지사는 민간의 소방활동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상할 수 있다. 다만, 관계인 등이 소유한 소방시설의 사용에 따른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은 민간자원을 제공한 사람의 청구에 따르며,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상황 및 재난대응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7조(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기간)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는 소방활동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10.2.4., 2011.5.30., 2014.1.28., 2014.12.30.>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소방대"(消防隊)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 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 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義務消防員)
 - 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義勇消防隊員)

6. "소방대장"(消防隊長)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치료 및 보상) ①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제45조에 따른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이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재난의 응급대책·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응급대책·복구 또는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2조(치료 및 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①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은 해당 재난이 국가의 업무 또는 시설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또는 시설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부상자에 대한 치료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8.23.>

③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망자의 유족이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8.23.>

④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장비 등의 고장이나 파손에 대한 보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한다. <신설 2012.8.23.>

1. 고장나거나 파손된 장비 등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참여 당시

장비 등의 교환가액

2. 고장나거나 파손된 장비 등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에 필요한
실비

⑤ 제1항에 따른 보상 중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그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부모, 조부모, 성년인 자녀,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
하되, 태아는 그 지급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8.23.>

[전문개정 2010.12.7.]

제73조(치료 및 보상금의 지급절차)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부상자
의 치료절차에 관하여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4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민
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무부처의 장"으로,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민방위기획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
별시·광역시·도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도 안전관리위
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
에 따른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
26.>

[전문개정 2010.12.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8조(보상금) ① 국가는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 ③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지급방법이나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보상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② 의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은 별표 2와 같다.
-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의상자 및 의사자가 구조행위를 한 해의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기준으로 한다.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4항

○ 사 유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의 견

- 재난현장에서 예측할 수 없는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어 첨부제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충북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류광희